

瑞山市小河川占用料等徵收條例改正條例案
檢 討 報 報 書

1. 提出者：瑞山市長

2. 提出日字：1997. 9. 12

3. 提案理由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4. 主要骨子

- 조례의 제명을 내용과 일치하도록 「서산시소하천집.사용료등 부과징수조례」로 함.
- 산정기준이란 용어대신 법규적 성격을 갖는 "부과기준"으로 함(안 제2조).
- 집.사용료 징수에 있어 응익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으로 집.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징수했다더라도 반환하도록 함(안 제6조).

5. 制定根據

- 소하천 정비법 22조

6. 檢討意見

- 본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전문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 현행 조례 제2조 「산정기준」을 「부과기준」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집.사용료의 수입은 부과와 징수 2단계로 이루어 지며, 산정기준이라하면 행정청 내부의 행위로서 지침정도에 불과하는 효력밖에 없고, 부과기준이라 한다면 행정청과 주민까지도 규제하게 되는 법규의 성질을 띄우게 되므로 「부과기준」으로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 제6조 「이미 납부한 집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집.사용료는 기간에 직결되어 일정한 요율을 부과하는데 이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집.사용행위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응의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조항의 제명이 이미 납부한 집용료 등의 반환이라고 규정해 놓고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본문규정은 논리상 모순이라 생각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1조 위에서부터 셋째줄 「부과징수」를 「부과·징수」로 중간점을 삽입하고, 그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